

## IX. 권징조례

### 1. 권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1장 1조)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 일체를 포함한다.

### 2. 권징의 목적입니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1장 2조)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존귀하신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 3. 재판의 안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1장 4조)

교인이나 직원이나 치리회를 불문하고 마음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은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은 역시 범죄가 된다.

### 4. 범죄란 무엇입니까?(1장 3조)

교인이나 직원이나 치리회를 불문하고  
마음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은 역시 범죄가 된다.

### 5.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1장 5조)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

### 6.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장 7조)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 기소할 수 있다.

### 7. 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원고로 하여금 먼저 무엇을 하게 해야 할까요? (2장9조)

마태복음 18: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도록 시도하고 그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아야 한다.

8.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누가 원고가 됩니까?(2장 11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9. 교인이 다른 사람의 횡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을 조사해 줄 것을 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쓰시오. (2장 13조)  
 그 치리회가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1인 이상을 선정하고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회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의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10.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대상자는?(2장 14조)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품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깨달음이 부족한 자
11.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4장 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할) 권한이 있다.
12.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4장 31조)  
 장로회 예배모범 제16, 17장의(16-시벌 / 17해벌)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13.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새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장 33조)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하기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기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14. 당회가 정하는 책벌이 무엇인지(7가지)를 쓰시고, 출교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 책벌입니까? (5장 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로, 출교는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15.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쓰시오. (6장42조)

면직.

16. 노회가 목사에 대한 소송사건을 재판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쓰시오. (6장 37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피지니 그 목사됨을 인하여 치우쳐서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17.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이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할 때 노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를 쓰시오. (7장 54조)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대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은 출교도 할 수 있다.

18. 치리회가 즉결 처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7장 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에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9. 어떤 입교인이 본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7장 53조)

본 당회는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20. 증인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8장 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에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서약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21.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9장 71조)

1. 검사와 교정
2. 위탁판결
3. 소원

#### 4. 상소

22.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지도를 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9장 78조)

위탁판결

23. 소원과 상소는 어떤 경우에 구하는 것인지 쓰시오.(9장 84조, 94조)

소원 (Petition) :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저촉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상소 (Appeal) :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자라 한다.

24. 이의와 항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쓰시오. (10장, 102조, 103조)

이의 (Dissent) : 이의라 함은 어느 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다수의 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 것.

항의 (Protest) : 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

25. 교인이 다른 지교회로 옮길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12장 108조)

그 지교회에(새로 등록하는 교회) 가입할 때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 (이명서를 받은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26. 노회재판국 국원과 성수를 쓰시고 재판국에서 다루는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13장 117조)

노회재판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할 수 있다.

27. 총회재판국은 어떻게 구성합니까?(제13장 124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